

[별표4] <개정 2016.9.28.><개정 2022.12.28.><개정 2025.04.29.>

신규 채용직원의 경력산정 기준

구분	경력내용	환산율		
		100%	70%	50%
공통	군 복무경력	○		
국가·지자체 공무원	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 근무경력	○		
공공·출자 ·출연기관 근무경력 (정규직)	채용관련분야 업무	○		
	채용관련분야 업무 외 (단, 행정·경영·연구·기술분야 상근경력만 인정)		○	
국가·지자체, 공공·출자 ·출연기관 근무경력 (비정규직)	채용관련분야 업무	○		
	채용관련분야 업무 외 (단, 행정·경영·연구·기술분야 상근경력만 인정)			○
법인, 단체, 민간기업체 경력	채용관련분야 업무	○		

※ 4대 보험 가입증명 가능한 자에 한하여 적용